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</li> <li>4.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기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의회부의장,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</li> <li>2. 자치구청장</li> <li>3. 정무부시장,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</li> <li>4.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/ol> <p>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.</p> <p>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.</p> 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</p> <p>②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되고, 서기는 행정관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.</p> <p>제8조(상임위원회) 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.</p> <p>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위원회의 서기가 겸한다.</p> <p>제9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기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세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10조(회의록)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